#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68

발의연월일: 2020. 12. 21

발 의 자: 박영순・이용호・강준현

안민석 • 박상혁 • 허 영

김승남 • 문진석 • 노웅래

조승래 • 김윤덕 • 이개호

허종식 • 황운하 • 심상정

진성준 • 박주민 • 김회재

박완주 · 김용민 · 정필모

이학영 · 오영환 · 이광재

홍기원 · 장경태 · 문정복

김주영 · 소병훈 · 주철현

최기상 • 이용선 • 천준호

이수진 · 신정훈 의원

(35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거부된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해당 외국인의 송환의무를 부여하고, 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 등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

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이라 함)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고, 송환대기실을 제공받은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외 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에 대한 교통비·숙식비 등 비용과 책임을 부 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송환의 용이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인한 경우에까지 입국 또는 상륙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의 송 환 시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운수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 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상의 표준 및 현재 송환대기실 이용의 주된 이유가 운수업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여도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당국의 입국거부처분 때문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입 국이 거부된 외국인의 '송환대기실 이용'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발급한 송환지시서에 의하여 개시되고, 종전의 송환대기실 운영은 법 률상 근거 없이 외국인을 수용·보호 또는 감금한 상태이고 수용자는 행정청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8, 25, 2014인마5 결정) 임. 따라서 수용시설로 운용해서는 안되는 송환대기실을 이용하는 다 수의 외국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송환까지 조력하는 등의 고난이도 의 업무는 법적 책임이 뒤따를 뿐 아니라 본질상 행정청의 업무 인데. 이를 운수업자 등 아무런 법집행력이 없는 사인이 수행하도록 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송환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여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송환의원인이 운수업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명하는경우에는 송환의 비용과 책임을 운수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환대기실을 이용하는외국인 관리업무를 공권력주체가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등).

법률 제 호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를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그의 비용 (수송 비용은 제외한다)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7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조제4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신속한 송환을 위한 선박등을 제공하는 등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체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제7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항에 외국인이 송환될 때까지 머무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을 삭제한다.

제97조제제6호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76조(송환의 의무) ① 다음 각 제76조(송환의 의무) ① 입국하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 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 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 1. ~ 2.(생 략)
- 3. 제12조제4항에 따라 선박등 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 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4. ~ 5. (생 략)

<신 설>

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그의 비용(수송 비용은 제외한다)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 국 밖으로 송화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 3. ~ 4. (현행 제4호 및 제5호 와 같음)
- ② 제12조제4항에 따라 선박등 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 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 자가 신속한 송환을 위한 선박 등을 제공하는 등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체없이 대한민국

②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 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제공되는 장소 또 는 그 장소에 머무르는 외국인 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7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5. (생 략)
- 6. 제76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 7. (생략)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항에 외국인이 송환될 때까지 머무 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후단 삭제>

-----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76조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 7. (현행과 같음)